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결정 협의체 관계 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 추가》

■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20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제2205420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결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가(안 제16조제2항)	3

I.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제2205420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유정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1.

다. 회 부 일 : 2024. 11.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으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금지되면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구글지도, 애플지도가 우리나라에서만 정밀한 지도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으며, 구글지도와 애플지도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다른 모바일앱들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우리나라가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

은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가 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국외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3. 검토의견

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결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가(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생략)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u>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u>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에 따르면, 기본측량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이고, 기본측량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의 근간이 되며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인은 기본측량성과를 열람·복제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음²⁾.

다만, 현행법은 기본측량성과의 내용이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등 제14조제3항³⁾의 요건(이하 “공개 제한 요건”이라 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해당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제16조제2항 본문)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으로 제작된 것
2.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복제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없다.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이하 “국외 반출 결정 협의체”라 함)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 제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6조제2항 단서).

현행법은 이와 같은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결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외 반출 결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추가하려는 것임⁵⁾.

5)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은 공공 목적의 측량을 ‘기본측량’과 ‘공공측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공측량성과에 대해서도 국가안보 등의 사유와 관련하여 유사한 국외 반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바, 개정안의 내용은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결정에도 적용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제19조(공공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 및 공공측량기록 또는 그 사본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과 및 공공측량기록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공공측량성과 및 공공측량기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그 복제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서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금지 규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지도의 국외 반출 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舊 「측량법」(1975. 4. 11. 개정·시행)에서 규정⁶⁾되었음.

이후, 이러한 국외 반출 금지 규제로 인해 해외의 지도제작업체가 국내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국내지명의 표기가 잘못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세계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지도 등의 공간정보서비스 출시가 어려워지는 등 국내 지리정보서비스(GIS⁷⁾)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⁸⁾에 따라,

2014년 「공간정보관리법」 개정(2014. 6. 3. 개정, 2015. 6. 4. 시행)을 통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취지의 제16조제2항 단서가 신설되었음.

이와 같이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용되고 있어,

6) 「측량법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090274호)에 대한 본회의수정안(1975.3.19.) 수정이유 참고.

“지도는 지형, 지물 등 국토의 실태를 표시한 것으로서 제작과정에서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보안조치가 되어 있으나, 국외반출의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규정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으로 볼 때, 지도가 국외로 반출됨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 외에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임.”

7)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7342호)에 대한 검토보고서 참고.

국내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외국 기반의 공간정보서비스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관광산업의 측면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활용률이 높은 외국 기업의 지도서비스가 국내에서 정밀한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당 지도서비스를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결정 협의체는 안보 관련 기관의 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결정 시 안보 외 분야를 관장하는 기관의 의견이 보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⁹⁾.

9) 최근 10년간(2015년~2025년 1월말)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결정 협의체는 3차례 개최되었으며, 안보 우려가 반출 여부 결정의 주요 사유로 이해됨.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결정 협의체 개최 현황(2015년~2025년 1월말)>

구분	안건	반출 결정 여부	결정사유
2016.6.22. (1차)	구글社の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 심의 * 1/5천 지도(국토지리정보원 제작)를 기반으로 SK텔레콤에서 가공한 지도	유보	<u>안보·국익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추가검토 후 재심의 필요</u>
2016.8.24. (2차)	구글社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 재심의	유보	신청인(구글社) 측에서 우리 정 부 의견 청취 등을 위한 협의 요청에 따라 추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 필요
2016.11.18. (3차)	구글社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 재심의	불허	신청인(구글社) 측에서 <u>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u>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u>불수용함</u> 에 따라 반출 불허 결정

※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개정안은 국외 반출 결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협의체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때 관광산업 등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국외 반출 심사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국가안보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균형을 고려하여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의가 증진되어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확대·발전 계기도 마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으로,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결정 협의체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국익의 관점에서 국방·외교·산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지도서비스 개선사항도 해당 협의체에서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78